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삼성중공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의
행동 규범과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기업이 노동 인권, 안전 보건, 환경, 기업 윤리 및 경영 시스템 영역에서
윤리적 기준과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실행 원칙으로서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당사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협력회사(하도급사 포함)에게
본 규범의 준수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본 규범은 삼성중공업의 모든 협력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 및 협력사 전용 홈페이지(S-Gips)에 공개되어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협력회사 관리 정책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행동규범 구성

항 목		내 용
1. 노동 및 인권 (Labor & Human rights)		
1.1	자발적 근로(강제 근로 금지)	노예, 인신매매 등 강제노동 근로 금지
1.2	아동 노동 금지	아동 고용 및 투입 금지
1.3	근로시간 준수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비자발적인 근로 금지
1.4	임금 및 복리후생	법정 임금 기준 및 복리후생 제공
1.5	인도적 대우	정신적/신체적으로 비인도적인 대우 금지
1.6	차별 금지	고용, 승진, 보상, 교육 등 차별 금지
1.7	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협의회 운영/가입 자유
2. 안전 및 보건 (Safety & Health)		
2.1	산업 안전	잠재적인 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위험 감소대책 수립/실행
2.2	비상사태 대비	비상상황 계획 수립 및 실시
2.3	산업 재해 및 질병 예방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2.4	신체부담 업무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예방/관리
2.5	기계설비의 안전유지	생산 필요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2.6	식당과 기숙사 관리	청결하고 안전한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구축
2.7	안전보건 교육	모든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3. 환경 (Environment)		
3.1	환경 경영	환경 친화적인 경영 추구
3.2	환경 인허가	환경 인허가 취득, 유지, 관리
3.3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원자재 보전 및 사용량 최소화
3.4	유해물질 관리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관리
3.5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대기오염물질 관리
3.6	폐기물 및 폐수 관리	폐기물/폐수 처리 및 발생량 저감 관리
4. 기업윤리 (Ethics)		
4.1	청렴성	청렴성 유지
4.2	부당이익 금지	뇌물수수 등 부패 금지
4.3	공정거래 준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지양
4.4	정보 공개	거래에 대한 투명한 공개
4.5	지식재산권 보호	기밀정보 및 기술 등 재산권 보호
4.6	개인정보 보호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
4.7	분쟁광물, 책임광물 사용 금지	분쟁지역의 광물 사용 금지
5. 경영 시스템 (Management System)		
5.1	준수의지 표명	본 규범에 대한 경영진의 준수의지 표명
5.2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본 규범에 대한 관련 법규 모니터링
5.3	리스크 관리	리스크 파악 및 적절한 통제
5.4	목표 수립	목표와 계획 수립 후 정기적인 평가 수행
5.5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임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5.6	임직원 참여 및 고충처리	임직원이 참여하여 지속개선 추구
5.7	문서와 기록	본 규범 준수에 대한 기록 관리
5.8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협력회사의 공급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1. 노동 및 인권 (Labor and Human rights)

1-1. 자발적 근로 (강제 근로 금지)

협력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근로와 작업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협력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이나 의무적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1-2. 아동 노동 금지

협력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분야 및 과정에서 아동의 고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여기서 '아동'은 15세 미만 또는 자국 및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협력회사는 채용과정에서 근로자의 연령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법정 고용 최저연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상 위험한 업무나 연장/야간 근로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1-3. 근로시간 준수

협력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로와 작업은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과 초과 근로수당,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의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1-6.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의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출신,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1-7.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와 그러한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해 차별이나 보복,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Safety and Health)

2-1. 산업 안전

협력회사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관리와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체계와 근로자에 대한 공지 및 대피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로자 대상 대피 훈련, 탈출 시설 및 소화 장비 확보 등을 포함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2-3. 산업 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치료를 제공하고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2-4. 신체부담 업무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반복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5.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성 여부 및 안전 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할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정장치 및 방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2-6. 식당과 기숙사 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비상구와 냉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 사물함 등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개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7.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 (기계, 전기, 화학물질, 화재 및 신체적 위험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교육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배치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건강 및 안전문제를 감지할 경우 자유롭게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3. 환경 (Enviroment)

3-1. 환경 경영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발생 가능한 환경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며,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 및 공정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3-2. 환경 인허가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 상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하고 최신 개정본 기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3.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협력회사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수, 목재, 화석연료, 광물 등 원자재 자원을 보전하고, 그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3-4. 유해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 및 기타 물질을 파악/기록하고, 안전하게 취급, 보관, 재활용 또는 재사용 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3-4.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분석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3-5. 폐기물 및 폐수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발생하는 폐수, 고형 폐기물 등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 후 배출해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 또는 폐수처리하여야 하고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4. 기업 윤리 (Ethics)

4-1. 청렴성

협력회사는 삼성중공업과의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익 취득·제공 및 횡령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4-2. 부당이익 금지

협력회사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위해 뇌물 또는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특정인에게 사업기회를 획득 및 유지하거나, 제3자를 통해 뇌물 또는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4-3. 공정거래 준수

협력회사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담합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4-4. 정보 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의 노무, 안전보건, 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 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4-5.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회사는 삼성중공업 및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4-6.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7. 분쟁광물, 책임광물 사용 금지

협력회사는 국제사회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코발트, 탈탄륨, 주석, 텅스텐, 금 등)사용을 지양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삼성중공업의 요청 시 관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 공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경영 시스템 (Management System)

5-1. 준수의지 표명

협력회사는 본 규범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 및 노동 관행, 안전보건, 환경, 윤리와 관련된 경영 요소도 기업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회사의 최고 경영진은 본 행동 규범에 대한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배포 및 게시해야 합니다.

5-2.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경영 상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5-3. 리스크 관리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서 언급한 모든 분야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각 리스크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과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절차적/물리적 수단을 통해 통제해야 합니다.

5-4. 목표 수립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서 언급한 모든 분야에 대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달성 현황을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5-5.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회사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이행하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회사의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와 관련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해 근로자, 협력회사 및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5-6. 임직원 참여 및 고충처리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5-7. 문서와 기록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5-8.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삼성중공업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하도급사에 전달하고 해당 하도급사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